

## 변경대비표

1. 정정대상펀드

-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자투자신탁H(주식)
-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자투자신탁UH(주식)

2. 효력발생일 : 2010년 2월 17일 (수요일)

3. 정정사유 : 기재사항 정정

- 1) 종류 C-F 및 종류 C-W 수익증권의 가입자격 추가
- 2)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내용 “과세” 항목 반영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제2부.6.가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* 종류별 가입자 격	종류 C-F :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	종류C-F 수익증권 : 1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 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) 2.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 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 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 3.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 원 이상 매입한 법인
제2부.11.가. 종류별가입자격	종류C-W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 유한 자	종류C-W 수익증권 : 1.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2.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3.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 정의 신탁업자
제2부.6.나. 종류형구조	종류C-F 수익증권 : 집합투자기구	종류C-F 수익증권 : 집합투자기구/기관투자자 및 기금/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/500억원이상 매입한 법인
제2부.13.나. 가입자격	종류C-W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	종류C-W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/신탁업자/특별계정의 신탁업자
제2부.14.나. 과세		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내용 “과세” 항목 반영하여 일부 수정